

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겠습니다.



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예비비 집행결정(복지사업 구비분담분)**

1. 구청장 방침 제632호(기획예산과-14030, 2014.12.3.)와 관련됩니다.

2. 『지방재정법』 제43조, 『동법시행령』 제48조 및 『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비비를 아래와 같이 집행결정하고자 합니다.

<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 및 사유 >

(단위: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		예산액
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
주민생활과	주민생활지원	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	긴급복지 지원	일반보상금	사회보장적수혜금 (301-01)	8,500
보육가족과	보육운영	보육활동지원	보육돌봄서비스	민간이전	사회복지보조 (307-10)	323,208
보육가족과	보육운영	보육활동지원	영유아보육료지원	민간이전	사회복지보조 (307-10)	1,883,054
보육가족과	보육운영	보육활동지원	가정양육수당지원	일반보상금	사회보장적수혜금 (301-01)	874,298
노인청소년과	노인복지증진	노인의생활안정	기초노령연금	일반보상금	사회보장적수혜금 (301-01)	251,935
건강관리과	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	모자보건사업	국가예방접종	민간이전	의료및구료비 (307-01)	123,547

⇒ 사유: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및 연도 신규 복지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한 구비 분담금 예산 반영

붙임 예비비 지출 요구서 및 예비비 지출관련 방침서 1부. 끝.

주무관 **박영수** 예산팀장 **이정희** 기획예산과장 **박기웅** 기획재정국장 전결 12/04
김종순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14116 () 접수 ()
우 133-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<http://www.sd.go.kr>
전화 02-2286-5167 / 전송 02-2286-5904 / 대시민공개
궁금할 때, 불편할 때 국번없이 120으로!